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 신설》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91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0679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3

I.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0679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0.

다. 회 부 일 : 2024. 12.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법령에서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부재한 탓에, 여전히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지방이전계획의 변경항목 중 다수는 지방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루는 데 있어 무관한 경우가 많아, 이전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정책적 실익이 있으며, 대부분 내용은 큰 실익이 없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정책적 제약이 많아,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

가 있으며, 기존 이전계획 변경 방식이 아닌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
후관리 활동에 대한 승인 형식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
만 관리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3. 검토의견

가.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방안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라 이전을 완료한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완료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후관리방안(이하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기관의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잔류기관(이전완료공공기관의 조직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하지 아니한 조직을 말한다)의 업무,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으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현행	개정안
	불구하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 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이 수 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완료공 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현 황 중에서 지방이전의 목적과 관련 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에 관하여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 관리방안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 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과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⑤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 관리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지방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이하 “이전완료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이 ① 이전기관의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에 관한 사항, ② 이
전완료 공공기관의 조직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하지 아니한 조직의 업
무,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이전완료 공공기
관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후관리방
안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후관리방안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2007년 1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7. 2. 12. 시행)된 이후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110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구분		이전 완료기관	이전 완료 시기
혁신 도시 (110개)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3개 기관	2012. 12. ~ 2017. 12.
	대구	한국부동산원 등 10개 기관	2012. 12. ~ 2015. 10.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2013. 03. ~ 2019. 01.
	울산	근로복지공단 등 9개 기관	2013. 01. ~ 2019. 02.
	강원	도로교통공단 등 11개 기관	2013. 11. ~ 2017. 04.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등 11개 기관	2013. 12. ~ 2019. 12.
	전북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	2013. 08. ~ 2017. 09.
	경북	한국도로공사 등 11개 기관	2013. 04. ~ 2016. 03.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	2013. 01. ~ 2017. 12.
	제주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	2012. 12. ~ 2015. 10.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등 19개 기관	2013. 12. ~ 2017. 01.
개별 이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1개 기관	2008. 02. ~ 2018. 07.

※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재구성

혁신도시의 물리적 조성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2017년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으로 변경(2018. 3. 27. 시행)되었고, 「혁신도시법」은 수도권 소

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그런데, 「혁신도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내용만 규정¹⁾되어 있고,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²⁾’ 지침을 마련하여 이전완료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취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전완료 공공기관이 당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현저히 다르게 운영할 불가피한 사항³⁾이 발생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제4조를 준용하여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2)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2015. 10. 14. 규정) →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2024. 12. 개정)

- 3) 공공기관의 본사·주사무소(다만, 지역본부·지사·특수 사업소는 제외)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인원·조직·시설에 관한 사항 ※ 자료: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2024. 12.), p.2

국토연구원의 연구⁴⁾에서는 현행 법령상 ①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 관리 방안을 명시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있어 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②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규정⁵⁾하면서 동시에 개별 조문에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으로 제한 내용을 규정⁶⁾하고 있어 혼동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으며,

현행 지침상 이전 완료 후에도 여전히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수립한 지방 이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개념상 모순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전완료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임.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이전완료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4)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마련 연구」, 국토연구원, 2023. 8., p.85 참조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등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2014년 5월 경상남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2021년 1월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설립⁷⁾되었음.

그런데,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2년 5월 혁신기술연구부를 대전으로 이전하고, 2024년 초에는 핵심부서인 획득연구부의 대전 이전을 검토하다가 지역사회 등의 반대로 획득연구부의 대전 이전 추진을 백지화⁸⁾하였음.

이는 현행법령의 미비 외에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지침에서도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조직이 이전지역에서 비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을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으로 개정하면서 이전완료 공공기관이 재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7)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경상남도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음.

8) 「방사청, 국기연 일부 부서 대전 이전 철회…진주시에 입장문」, 연합뉴스(2024. 2. 1.)

그리고,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은 ①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②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③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④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⑤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⑥ 사무소 부지매입비·신축비·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⑦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함(「혁신도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의 관점에서 지방이전계획의 대부분 항목은 완료된 사항으로서 사후관리 차원의 필요성은 낮다고 생각9)됨.

따라서, 「혁신도시법」에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이전완료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고, 이전완료 공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필

9)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마련 연구」에서도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외에는 큰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 지방이전계획 주요 항목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 >

구분	사항	사후관리의 영역
「혁신도시법」 제4조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이전인원의 수도권 잔류는 관리 필요 - 이전지역의 비수도권으로 조직 이동도 일정 부분 관리 필요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 이전완료 이후이므로 실익 없음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이전완료 이후이므로 실익 없음
동법 시행령 제3조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 계획에 따라 이전 완료한 이후라 별도 실익은 없음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 지원대책에 대한 실익은 없음
	3. 사무소 부지매입비·신축비·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 이전비용에 대한 논의는 실익 없음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 수입 감소 대책은 지방이전계획을 통해 다루는 만큼 별도 실익은 없음

※ 자료: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마련 연구」, 국토연구원, 2023. 8., p.74 참조

요성이 인정됨.

추가로,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과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혼동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의 규정에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① 이전완료 공공기관은 지방이전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으므로 별도의 사후관리방안 수립보다 수도권 등 잔류조직 내용을 담은 사후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② 지방이전계획 수립·변경 절차와 동일하게 사후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규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90